



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

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“공단”과 “개발원”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 및 역할)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공단”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체 선택 및 의뢰, 급여비용 청구 등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시범사업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시공업체로 안내하여 시공 및 급여비용 청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② “개발원”은 공단의 「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」 참여에 적합한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발굴,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
- ③ 양 기관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, 사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정보·자료의 교류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.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)

- ① “공단”과 “개발원”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하며, 청렴·윤리·인권보호·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② 협약이행·교류·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.



제5조(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년간 유효하며, 본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종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매 1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②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, “공단”과 “개발원”과의 구체적인 권리·의무에 대한 추가 협조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 및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하며,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·협의하여야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10. 10.



국민건강보험공단
요양기획실장
한 성 욱

서명 또는 인

한 성 욱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일자리사업본부장
서 광 국

서명 또는 인

서 광 국